

- ② 경영으로 규모: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%이상 감소 기업, 대형사고(화재 등)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

(비교시점)

연도: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,

반기: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,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,

분기: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,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,

월별: 신청전월과 전전월, 신청전월과 전년동월

※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,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,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,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, 원전 협력 중소기업, 기술침해 피해기업 규모 요건 적용 예외

■ 지원규모

구분	용자 조건
용자방식	직접대출
대출한도	(직접대출, 운전) 10억원 이내 (3년간 15억원 이내)
대출기간	(직접대출, 운전) 5년 이내 (거치기간 : 2년 이내)
대출금리	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 + 0.5%p
기 타	운전자금의 용도는 경영으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

■ 문의처

-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(☎ (국번없이) 1357)
- 정책자금 안내콜센터 (☎ 1811-3655)

금융지원

금융

신성장기반자금

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, 고부가 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

신청시기 : 연중수시 지원대상 : 중소기업

전담기관 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■ 지원대상

■ (혁신성장지원)

-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
- ※ (이차보전) 최근 3년 이내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
- 혁신성장지원자금 內 다음 지원대상을 위한 자금 별도 운용

-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
- 2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

※ 협동화사업 우대 사항

- 업력 제한 없음
- '용자제외 대상업종' 중 산업단체(KSIC 94110)는 지원 대상에 포함

- (스케일업금융) 혁신성장 잠재력 및 기반을 갖춘 기업으로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
- (Net-Zero 유망기업 지원)
 -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그린기술 사업화, 저탄소·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

(직접대출, 대리대출, 이차보전)

- 신재생에너지,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
-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
- 오염물질 저감 설비, 저탄소·에너지 효율화·환경오염방지 설비 등 도입 기업
-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선정기업
-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

(이차보전)

- 민간은행 ESG금융(대출) 활용 또는 예정인 기업(이차보전 지원대상으로 한정)

■ **(제조현장스마트화)**

–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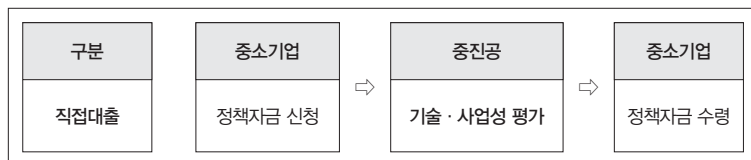
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'스마트공장 보급사업' 등 참여기업*

*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및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 등

- 스마트공장 등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
-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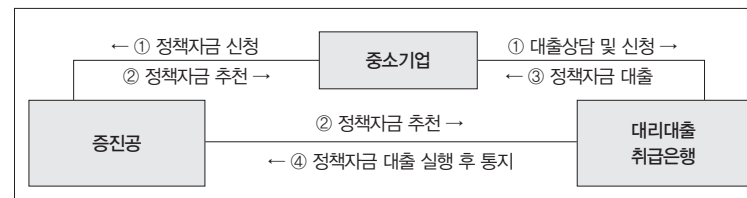
■ **지원내용**

- **(직접대출)**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정책자금 융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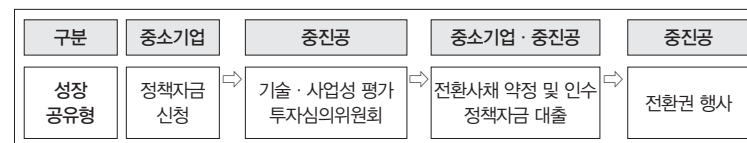
[직접대출 지원 방식]

- **(대리대출)** 은행을 통해 기업에 정책자금 융자

※ (대리대출 취급 은행, 14개) 경남, 광주, 국민, 대구, 부산, 신한, 우리, 전북, 제주, 하나, 기업, 산업, 농협, 수협

[대리대출 지원 방식]

- **(성장공유형)** 융자에 투자요소를 포함한 방식으로 성장가치가 큰 중소·벤처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중진공이 인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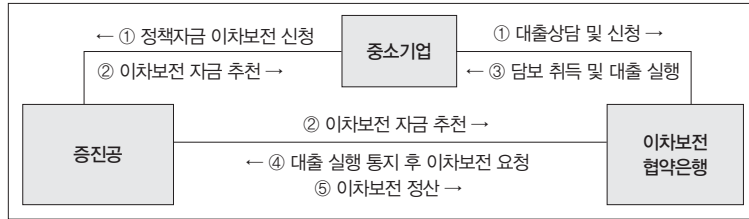
[성장공유형 지원 방식]**[성장공유형 융자 조건]**

구분	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 방식		상환전환 우선주 방식
한도	기업당 30억원 이내		
기간	업력 7년 미만	7년 이내 (거치기간 4년 이내)	중진공 상환권 행사 시 즉시 상환 ※ 상환권 행사는 대출(익일) 2년 또는 3년 中 협의하여 결정
	업력 7년 이상	5년 이내 (거치기간 2년 이내)	
금리	업력 3년 미만	표면금리 0.25% 만기보장금리 3%	중진공의 상환권 행사 시, 대출(익일)부터 상환일까지 연 5%(단리) 적용
	업력 3년 이상	표면금리 0.50% 만기보장금리 3%	
기타	사업장 건축(토지구입, 건축),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		

- **(이차보전)** 기업이 은행과 대출 상담 후 중진공에 이차보전 신청, 중진공이 기업평가를 통해 이차보전 대상 기업을 결정, 은행에서 대출 후, 중진공이 은행에 이차보전금 정산

※ (이차보전 취급 은행, 13개) 경남, 광주, 국민, 대구, 부산, 신한, 우리, 전북, 제주, 하나, 기업, 농협, 수협

[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방식]



[이차보전 용자 조건]

구분	용자 조건
대출한도	연간 5억원 이내 (3년간 10억원 이내)
대출용도	운전자금
대출기간	3년 만기일시상환
대출금리	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 ※ (이차보전 지원 기업 부담금리) 은행 대출금리 - 이차보전을
이차보전율	• (3%) 중점지원분야, 최근 1년간 수출실적 10만달러 이상 기업 • (2%) 그 외 업종
담보	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(신용, (부)동산, 보증서 등)

■ 지원규모

혁신 성장 지원	융자방식	직접대출, 대리대출, 성장공유형, 이차보전
	대출한도	- (직접 · 대리대출) 연간 60억원 이내 (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) - (성장공유형) 기업당 30억원 이내 - (이차보전) 연간 5억원 이내(3년간 10억원 이내)
	대출기간	- (직접 · 대리대출, 시설) 10년 이내 (거치기간 : 담보 4년 이내, 신용 3년 이내) - (직접 · 대리대출, 운전) 5년 이내 (거치기간 : 2년 이내) - (성장공유형) 상기 '지원내용' 참조 - (이차보전) 3년 만기일시상환
	대출금리	- (직접 · 대리대출)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 + 0.5%p • (산업기술보호법 제9조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)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 - (성장공유형) 상기 '지원내용' 참조 - (이차보전)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

혁신 성장 지원	기타	-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을 원칙(시설자금의 50% 이내) * 단, '23년 상반기는 한시적으로 시설자금과 별도로 운전자금 지원 가능 -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(기업 수행)
협동화	융자방식	직접대출, 대리대출
	대출한도	연간 100억원 이내(운전자금은 연간 15억원 이내)
	대출기간	- (직접 · 대리대출, 시설) 10년 이내 (거치기간 : 5년 이내) - (직접 · 대리대출, 운전) 5년 이내 (거치기간 : 2년 이내)
	대출금리	(직접 · 대리대출)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
	기타	- 토지구입비 지원 시 건축허가 조건 예외 적용 - 부지 조성공사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가능 -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(기업 수행)
Net-Zero 유망 기업 지원	융자방식	직접대출, 대리대출, 이차보전
	대출한도	- (직접 · 대리대출) 연간 60억원 이내 (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) - (이차보전) 연간 5억원 이내 (3년간 10억원 이내)
	대출기간	- (직접 · 대리대출, 시설) 10년 이내(거치기간 : 담보 4년 이내, 신용 3년 이내) - (직접 · 대리대출, 운전) 5년 이내(거치기간 : 2년 이내) - (이차보전) 상기 '지원내용' 참조
	대출금리	- (직접 · 대리대출)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 + 0.5%p - (이차보전)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
	기타	-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(시설자금의 50%이내) -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(기업 수행) - 탄소중립 수준진단 실시(진단요건에 해당할 경우 필수, 중진공 수행)
제조 현장 스마트화	융자방식	직접대출, 대리대출, 이차보전
	대출한도	- (직접 · 대리대출) 연간 100억원 이내 (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) - (이차보전) 연간 5억원 이내 (3년간 10억원 이내)
	대출기간	- (직접 · 대리대출, 시설) 10년 이내(거치기간 : 담보 4년 이내, 신용 3년 이내) - (직접 · 대리대출, 운전) 5년 이내(거치기간 : 2년 이내) - (이차보전) 3년 만기일시상환
	대출금리	- (직접 · 대리대출) 정책자금 기준금리 (변동) - (이차보전)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
	기타	-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(시설자금의 50%이내) -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(기업 수행)

■ 문의처
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자상담 지역본부
-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(☎ (국번없이) 1357)
-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(☎ 1811-3655)

금융지원
금융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·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설비 자금을 지원하여 기술기반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신청시기 : 연중수시 지원대상 : 중소기업 전담기관 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■ 지원대상

■ (내수기업 수출기업화)

-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* 10만불 미만 중소기업

* (수출실적) 최근 1년간(신청전월 기준) 직·간접 수출실적 합계

- ① (수출 초보기업) 1불~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
- ② (디지털수출기업화)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생산품(용역·서비스 포함) 수출 실적보유(준비 중 포함) 또는 중기부 '전자상거래활용사업'에 참여 중인 중소기업
- ③ (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)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(사업 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)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(유효기간 이내)
- ④ (기술수출 중소기업) 기술 수출 실적*을 보유(협약·계약** 포함)한 중소기업

* (실적) 특허, 상표, 디자인, 노하우, 기술서비스, R&D 등 무형자산 판매 등

** (협약·계약) 기술수출 관련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

■ (수출기업 글로벌화)

-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* 10만불 이상 중소기업